탄 원 서

수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귀중

사건번호 : 2026고합569

피고인 : 윤한홍 의원

관련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여러분. 저는 공적 의혹은 엄정하게 확인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형사책임 또한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믿는 시민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과 공사 계약을 둘러싼 의혹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평가나 사회적 논란의 크기가 이 사건의 증거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윤한홍 피고인에 대한 신중한 심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거나 사건의 진실을 미리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가 성립하는 범위와 성립하지 않는 범위를 세밀하게 구별하는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책임이 일부 인정될 경우에도 실제 관여 정도와 확인된 정상관계를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1. 두 가지 혐의를 서로 구분하여 판단해 주십시오

공개된 기소 및 재판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피고인이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이전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관저 이전 장소와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종합건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 '21그램'의 공사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리는 교섭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지시 사실과 관저 공사에 대한 관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은 아직 재판에서 최종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입증해야 할 법률요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 혐의에 관하여 의문이 남는다고 하여 다른 혐의의 결론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디 법률별로 적용되는 행위, 시점, 고의, 결과를 나누어 심리하여 주십시오.

2. 직무권한의 범위와 실제 결과를 엄격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대법원 2020년 1월 30일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0도15105 판결은 직권남용죄의 성립에서 직무권한의 존재, 그 위법·부당한 행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 및 그 인과관계를 각각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합니다. 단순히 직위가 높거나 업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어떤 법령·직무분장에 근거한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는지, 그 지시가 통상적 조정·협의인지 아니면 권한의 목적을 벗어난 행사인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 없는 행위를 했거나 어떤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는지를 구분해 주십시오. 특히 인수위 단계의 업무와 정부 출범 후 계약·집행 주체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하여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의 명의대여 금지와 알선행위를 별도로 심리해 주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차용뿐 아니라 금지된 행위의 알선도 규율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명의대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알선 혐의까지 당연히 배척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문의나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범죄의 알선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2022년 4월 무렵의 명의대여 업체 교섭 지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상대방과 전달 경로는 무엇인지, 피고인이 명의대여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금지된 행위의 성사를 도우려 했는지, 실제 대화와 행위가 법률상 '알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각 증거에 비추어 판단해 주십시오.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공소장에 특정된 적용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다른 사람의 결정·행위를 피고인 개인의 책임과 구별해 주십시오

관저 후보지 검토와 공사 계약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실, 관계 행정기관, 민간 업체 등 서로 다른 지위의 주체가 관련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와, 개별 행정기관 및 업체가 독립적으로 내린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 주십시오.

특히 회의록·지시 문서·통화 내역·문자메시지·결재자료·계약 절차와 명의대여 교섭 관련 자료가 제출된다면 각 기록의 작성 시점과 맥락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제3자의 추정이나 사후 평가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실제 발언과 행위에 의해 형사책임이 특정되기를 바랍니다.

5. 공소사실과 증거 사이의 연결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2026년 10월 19일 공판준비기일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 측에 적용 법조와 개별 증거의 입증 취지를 더 분명하게 정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유죄나 무죄의 예단이 아니라 정확한 쟁점 특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각 증거가 직권남용의 어떤 요소를 뒷받침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어떤 행위를 증명하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구별되고 이에 대한 반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언론의 해석보다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원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6. 사회적 논란의 무게와 개인의 법적 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국가의 계약과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는 당연히 엄중히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사건일수록 누군가를 빨리 처벌해야 한다는 압력과, 반대로 무조건 옹호하려는 태도 모두 법정 밖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 실제 영향을 하나씩 살펴 그에 맞는 결론을 내릴 때만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7.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범위에 맞는 관대한 판단을 청합니다

만일 재판부에서 일부 혐의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신다면, 행위의 주도성·종속성, 지시의 구체성과 실현 여부, 실제 계약과 시공 결과에 미친 영향, 피고인에게 귀속할 수 있는 이익의 유무, 다른 관련자와의 책임 분담을 구별해 주십시오. 전과, 재범 위험, 반성 등 형법 제51조상 정상관계는 실제로 제출되고 확인된 자료에 한해서만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도하지 않은 처분과 관대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저는 공공계약에 관한 의혹을 가볍게 보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정함이야말로 개별 사실을 정확히 구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혐의에는 무죄의 판단을,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에는 그 정도와 확인된 사정을 반영한 절제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지위가 유죄를 대신하지도, 무죄를 보장하지도 않는 공정한 재판을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윤한홍 피고인의 사건을 법률과 증거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신중하고 균형 있게 심리하여 주십시오. 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마음을 삼가 올립니다.

탄원인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 _____

연락처 : _____ 생년월일: _____